금융거래 목적 확인서

KB국민은행 앞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오니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필요 시 은행이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서류의 정당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, 본 확인서의 성실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						
	[V]	급여/아르바이트비/연금수령	[]	기타(하단에 자필로 기재)
금융거래 목적	[]	공과금/관리비 납부			
08/19/ 77	[]	모임 회비			
	[]	상거래 대금 수령			

■ 고객확인사항 : 해당되는 []에 ∨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
입결	들이 자	유로운 예금	(통장)	직불/체크카드	삼성/현대카드	전자금융(인터넷/폰뱅킹) 자동			
신규	재발행	거래중지 계좌환원	한도제한 해제	신규/재발급/ 추가발급	현금기능 등록 (CD)	신규	장기미사용 이체제한	보안매체(재)발급, 타기관OTP 등록	이용번호 등록, 이용한도 증액
[0]	[]	[]	[0]	[]	[]	[]	[]	[]	[]

구분	항 목	예		아니오
	① 타인으로부터 통장(카드)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 ☞ 통장(카드)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미성년자 여부와 상관없이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	[/]	[V]
공 통	②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,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 ☞ 대출·취업 등을 미끼로 통장(카드)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포통장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입니다.	[]	[V]
법인 통 장 개설시	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통장개설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 통장(카드)을 보관·전달·유통한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.	[]	[]

통장(카드)을 타인에게 대여·양도하는 경	우 또는 출처를 모르는 돈을 인출·전달하는 경우	고객확인(٧)			
▶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 (통장 명의인에게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	임(70%)을 부과 가능)	A			
▶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					
▶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(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통장) 신규개설 제한, 카드발급·여신취급 제한 가능)					
(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증빙자료 제	출이 어려운 경우) 금융거래한도계좌 안내	고객확인(٧)			
 ▶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까지 제한 (금융거래한도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) - 창구 1일 출금한도 100만원 - 현금(체크)카드 국내·외 자동화기기 1일 인출 및 약 - 인터넷(폰)뱅킹 1일 이체한도 30만원 - 자동화기기 통장출금 및 무매체출금(무통장/무카드 					
※ 당·타행의 요구불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등록된 '대포통장 명의인'의 경우 일정기간 요구불 계좌 신규가 제한됩니다.					
□ 본인은 본 확인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재하였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(카드)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.					
20	성 명(업체명)	(인/서명)			
_	대 리 인	(인/서명)			